

실제 또는 인지된 성소수자(LGBTQI) 지위에 기반한 보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

1.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개인은 직장, 주택 및 공공 공간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괴롭힘, 욕설, 모욕, 서비스 거부 또는 위협과 같은 행위를 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기회 제공에서 배제하는 것을 비롯해 차별적인 고용 결정을 내리는 것도 법에 위배됩니다.
2. 직장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해 직원들을 대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다운" 행동이나 복장 또는 "남자다운" 행동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복장 규정, 유니폼 요건 또는 몸단장 기준을 두는 것도 불법입니다.
3. 트랜스젠더 및 성적 비관행자는 원하는 대명사 및 이름을 호칭으로 이용하거나 본인의 성 정체성 및/또는 성별 표현에 가장 부합하는 화장실, 라커룸 및 기타 단성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본인의 성별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임대주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 및 표현을 이유로 임대 거부, 더 높은 임대료 부과, 부가 요금 청구, 편의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 관련 차별, 수리 거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건물에서 임대주, 임대주의 직원 및/또는 다른 세입자의 괴롭힘이나 위협적인 행동 또는 발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고용주가 성별 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직원 혜택 제공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배우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동성 부부의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성전환 관련 케어 보장을 위한 혜택도 제공해야 합니다.

차별을 받았거나 목격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212-416-0197번으로 전화해 신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NYC.gov/HumanRights에서 확인하십시오.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및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
방지



인권위원회

NYC.gov/HumanRights

#BeYouNYC

NYCCHR @NYCCHR



인권위원회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및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 방지



뉴욕 시에서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성 또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는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또는 간성(intersex)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직장, 학교, 주택 및 레스토랑, 영화관 또는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를 포함하는 많은 곳에서의 차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보복, 차별적 괴롭힘, 법 집행 기관에 의한 편견에 기반한 프로파일링으로부터 뉴욕 시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퀴어(LGBTQI) 커뮤니티를 보호합니다.

차별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상황 예시: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동성 파트너를 임대 추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세입자의 이성 파트너는 추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 고용주가 직원 동성 파트너의 출산 시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면, 다른 직원 이성 파트너의 출산 시 해당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 관련 욕설을 들었지만 학교 지도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레스토랑 매니저가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동성 고객에게 그런 행동을 중단하거나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애정을 표현하는 이성 커플에게는 이와 달리 대응할 경우.
- 트랜스젠더 남성이 본인의 대명사 및 호칭이 "그" 및 "미스터(Mr)"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관리자가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그녀" 또는 "미즈(Ms)"로 칭하여 성별을 잘못 지칭하는 경우.
- 트랜스젠더 여성이 다른 고객이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식당의 여성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는 경우.
- 회사가 남성에게 타이 착용 또는 여성에게 스커트 복장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 관리자가 직원 중 한 사람이 간성(intersex)임을 알게 되어 "진짜 여성"이 아니라는 등의 모멸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전략적 조치:

뉴욕 시 인권위원회는 뉴욕의 성소수자 시민이 존엄성과 존중에 바탕한 대우를 받고 차별이나 괴롭힘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테스트 및 위원회가 개시하는 기타 적극적 조사 기법을 통해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및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 근절을 위한 조례 집행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성소수자들이 지지하는 종교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뉴욕 시 통합 프로젝트(NYC Unity Project)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기관 차원의 노력을 통해, 위원회는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및 성소수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가족 간 대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 집행 지침을 제공하고 NYCHRL이 트랜스젠더 및 성적 비관행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 조치 중 하나임을 설명합니다.
- LGBT 센터를 통해 시 기관, 고용주, 주택 제공자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뉴욕 시민들의 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 전역에서 주도합니다.
- 뉴욕 시의 모든 정부 기관이 트랜스젠더의 공평한 화장실 이용 정책을 게시하고 이러한 정책 및 트랜스젠더 포용과 관련해 모든 현장 및 감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시장의 행정 명령을 제안했으며 이 명령의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 정부가 주도하여 트랜스젠더 및 성적 비관행자들이 이들의 성적 정체성 및/또는 표현에 부합하는 단성 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대해 재차 알리는 최초의 미디어 캠페인인 "Look Past Pink and Blue: #Be You NYC"를 개시했습니다.

